

■ 경찰공무원 임용령 [별표 1] <개정 2002.7.10>

특수기술부문(제16조제3항관련)

부 문 별	특 수 기 술
정보통신	유선·무선·정보통신보안 또는 전자통신기술
감 식	지문·화재·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
전 산	전산관리·시스템운영·업무분석·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개발기술
항 공	항공기의 조정 또는 정비기술
함 정	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
장 비	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, 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
회 계	경리·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
외 사	통역·번역 등 외국어 전문능력